

의안번호	2203730
의 퇴 인	이훈기 의원
회 답 일	2024. 9. 12.
추계번호	24B3550

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4항 (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립) 각 호 신설	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2. 「 <u>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<u>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</u> ※ 현행은 방송통신발전기금만 규정	재량규정
2	안 제11조제1항 제5호(위원회의 직무 등)	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함 5. 방송통신발전기금· <u>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</u>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※ 현행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만 규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제4항 (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) 각 호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제1항 제5호(위원회의 직무 등)	

2. 상세 사유

- 지역방송발전지원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고,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추가(안 제7조제4항 및 안 제11조제1항)
 - 개정안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의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¹⁾을 추가하고,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²⁾의 직무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임
 -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,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지역·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45억원 규모임

[표 1] 지역·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

(단위: 억원)

구분	사업내용	2024 예산
프로그램 제작 지원	지역·중소방송사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체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 프로그램 선정 및 제작비 지	39
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	콘텐츠 재제작 및 국내·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등 지역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유통 강화 지원	3.6
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	방송환경 변화 및 신기술 도입 등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 제작자 대상 전문교육 지원	2.7

자료: 방송통신위원회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성·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추가하고,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

1)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2203729호)」의 의결을 전제로 함
 2)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 제9조(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)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이 추가될 경우,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사업 확대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